

외국법제분석 95-3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와 최근의 法制發展

1995. 12.

研究者：文俊朝(수석연구원)

金鉉雨(법제처 법제연구담당관)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I. 머릿말	5
II.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成立·內容·理論問題	6
1.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成立	6
2.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內容	10
3.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理論問題	12
가. 社會主義市場經濟의 概念	12
나. 사회주의 市場經濟의 一般性和 特殊性	13
다. 市場經濟와 商品經濟의 關係	14
라. 計劃과 市場의 問題	16
마.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確立	16
III.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法制化	20
1.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法制化의 基本方向	20
2.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法律體系의 確立	23
3.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法制化의 前提	26
IV.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立法의 實際	28
1. 概 觀	28
2. 國有企業法	29
3. 市場競爭法	30
가. 市場競爭의 意義	30
나. 不正競爭防止法	31

4. 勞動立法	33
가. 意義	33
나. 「勞動法」의 制定	33
V. 맺는 말	35
* 중국의 最近제정법률일람표	37
* 중국의 最近입법동향	39

I. 머릿말

중국은 지난 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4中全会에서 '개혁·개방' 실시 이래 과거 십수년간의 경험을 총결하면서 '사회주의현대화'를 위한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으로 확정하고, 곧 이어 1993년 3월 제8기 中全会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실시"를 명문화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법제화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구축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4期 3中全会에서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確立의 若干의 問題에 관한 決定」을 채택하여 향후 시장경제체제의 골격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급세기말까지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법률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의 발진준비를 완료한다.

1949년 공산정권수립 이래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경제체제의 원칙으로 고수하면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를 실시해 온 사회주의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놀라운 대전환은 한편 이른바 하부구조인 경제기초 내지는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동이 정치, 법제 등을 포함한 상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국내외적으로 불러 일으키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접합하는 역사상 초유의 불안한 실험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를 '법제경제'로 규정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제건설'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경제도약의 안전판을 시장경제의 법제화를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로 부터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률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법제화는 곧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고는 이하에서 이상과 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먼저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성립된 과정과 그 주요내용 및 이론문제를 개관하고, 중국의 시장경제법제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시장경제법률체계를 분석한 후에 시장경제법제화에 전제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몇가지 법률을 실례로 들어 시장경제입법의 실재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와 그 법제화의 윤곽과 실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成立 · 內容 · 理論問題

1.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成立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부단히 경제체제의 모델을 모색하여 왔고 그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상 여하히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인식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오랜 기간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는 단지 계획경제일 뿐이고 상품경제일 수 없으며 더욱이 시장경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인식되었다. 상품경제는 단지 사유제를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는 자본주의경제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되었다.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일부 상품과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상품은 단지 서로 다른 소유제간의 교환에 한정되었고 시장은 계획경제의 틈속에서만 존재하여 그것의 보충이 되었을 뿐이었다.¹⁾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에서 全黨과 전국의 사업중심을 ‘社會主義現代化建設’로 전환할 것을 확정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기존의 경제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의 실시를 결정함으로써 전변의 계기를 맞게 된다. 11期 3中全會가 폐막된 후 중국의 최고정책결정층은 경제관리체제개혁의 원칙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첫째, 과거 중국과 소련이 실시한 경제체제의 주요결점은 오직 계획과 비례에만 따른 것이고 ‘시장조절’이라는 것이 없었다. 소위 ‘시장조절’이란 바로 가치법칙에 따라 조절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시기에는 두 종류의 경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계획경제 즉, 계획적이고 비례에 따르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조절 즉, 계획이 없이 다만 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전자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후자는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다. 또한 전자는 필수적이고 후자는 단지 유익한 보충일 따름이다.

셋째, 이 두 종류의 경제가 서로 다른 부문에서 반드시 차지하는 서로 다른 비

1) 劉國光, “略論社會主義市場經濟”, 「人民日報」, 1992年 10月 26日, 第5面 참조.

을을 잘 제어하여야 한다.

넷째, 계획경제의 부분이 증가할수록 반드시 시장조절의 부분이 접하는 절대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모두 상응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²⁾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1979년 4월 중국은 경제문제토론을 주제로 한 黨中央工作會議에서 전체국민경제중에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동시에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충분히 중시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는 데, 1979년 봄에 확립된 이러한 방침은 1982년 2월 중국공산당 12全大에서 그대로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조절을 보충으로 하는'(計劃經濟爲主, 市場調節爲輔) 제안으로 개괄되었다. 이 제안은 실제로 개혁·개방 실시초기에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을 주도하는 원칙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주의경제를 완전한 指令性的 計劃經濟와 동일시하였던 과거의 관점과 비교하면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이었다.

이후, 중국은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期 3中全會에서 개혁·개방 실시 이후 5년간의 경험을 종합하여 「中國共產黨 中央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을 채택하였다. 「決定」은 사회주의계획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적 상품경제'이며 완전히 시장에 의해 조절되는 시장경제가 아님을 제기함으로써 처음으로 사회주의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 계획과 시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고수해 왔던 계획경제의 틀을 깨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었고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그 주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말은 당시에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즉, 혹자는 '계획적'을 강조하여 계속해서 계획경제가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하였고 혹자는 '상품경제'를 강조하여 상품경제가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와 병존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주의경제의 특징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계획과 시장을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나 또한 혹자는 계획이 주체이고 시장은 보충이라고 생각하였고 혹자는 시장조절이 우선이고 계획조절은 2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처리하는 실천중에 형세의 변화때문에 어떤 때는 시장에 편향적이고 어떤 때는 계획의 집중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³⁾

2) 高 路, "社會主義市場經濟提法出台始末"(「新華文摘」, 1993年 第一期),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김소중 번역,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3), p. 447 참조.

중국은 이후 다시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13中全会에서 '계획적 상품경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작용범위가 전 사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경제운영체제는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기업이 시장을 인도하는 체제여야 하고 따라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과 육성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3中全会에서 확립된 이러한 제안은 계획과 시장,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인식과 실천면에서 제2차적인 전환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13中全会 이후 한걸음 나아가 상품경제와 시장경제는 동정의 양면이며, 고도로 발달하고 사회화한 상품경제가 곧 시장경제이고 시장경제라는 말의 사용은 상품경제의 운영체제의 특징과 시장이 자원배치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공유제를 주체로 한 기초위에서 시장경제 즉 '사회주의상품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였다.⁴⁾ 그러나, 시장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은 당시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며, 1989년 6월에 발생한 「天安門事件」으로 인해 右傾노선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됨으로써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주춤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중국에서 실제로 상품경제 내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관점은 늘 이데올로기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왔고 그 민감성 때문에 사회주의경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아직도 늘 이념상의 민감한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 자신만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제각기 사회제도의 범주에 두었던 것은 아니다. 서구경제학자들도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고 중앙계획경제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였다. 우리는 스스로의 전통적 관념의 관성에 속박받고 다른 한편 자기도 모르게 서구적 관념을 빌어 이 속박의 밧줄을 더욱 조여 왔던 것이다. 일부 서구학자가 이와 같이 행한 목적은 시장경제의 일반적 특징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착취적인 실질을 은폐하려는 데 있었음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비록 '사회주의상품경제'의 개념을 인정한 후에 일정기간중에도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 우려하며 시장을 많이 도입하면 자본주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심히 두려워 했다. 이리하여 개혁의 '시장지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개혁의 실천에 있어 큰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⁵⁾

계획과 시장에 대한 이러한 억압된 관점은 소위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통해

3) 劉國光, 같은 글 참조.

4) 高路, 같은 글, p. 454 참조.

5) 劉國光, 같은 글.

인식의 대전환을 맞게 된다. 鄧小平은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深圳, 珠海 등의 남부 經濟特區와 공업중심지인 武昌, 上海등을 순시하며 '개혁·개방'을 독려하면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발언을 하였다.

“계획이 더 많으나 시장이 더 많으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분이 아니다.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인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인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일종의 경제수단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착취를 없애고 결국에는 함께 부유해지는 것이다.”⁶⁾

이러한 논급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사회의 기본제도로 보았던 전통적 관념을 타파하고 시장과 시장경제에 대해 갖고 있던 소위 '자본주의공포증'을 치료함으로써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鄧小平의 「南巡講話」에서의 시장경제에 대한 논단은 1992년 2월 20일 중국 공산당 14全大의 「報告」를 기초하는 좌담회에서 “鄧小平동지가 남부를 시찰하면서 행한 중요담화는 그의 10여년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일관된 사상이 고도로 구현되고 새롭게 발전된 것이다. 14大의 「報告」는 이 담화의 정신을 전편을 꿰뚫는 주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江澤民的 제안으로 14全大의 「報告」에 대한 기초작업의 주요의제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江澤民은 동년 6월 9일 中共中央黨校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14全大의 보고를 기초하는 중에 제기된 ①계획과 시장이 결합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실시, ②계획(또는 거시적 조절통제)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③'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3가지 주요 의제 중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이 제안을 채택했으면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⁷⁾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중국의 경제학계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며 주요 일간지와 간행물을 통해 수많은 관련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실질을 가늠하는 최대의 명제로 부상하게 된다.

마침내 1992년 10월 12일 중국공산당 14全大의 개막식에서 江澤民은 「報告」⁸⁾를

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鄧小平同志關於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的論述”, 「人民日報」, 1993年 1月 8日, 第2面.

7) 高路, 같은 글, pp. 459~460 참조.

통해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 두가지 경제수단이 상호결합하는 범위, 정도와 형식은 시기, 분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운영에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이어 10월 18일 14全大는 「13期 中央委員會「報告」에 관한 決議」를 통과시키고 江澤民의 「報告」를 승인하면서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를 '社會主義市場經濟'체제의 확립으로 확정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추구해 온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는 경제체제의 모델로 확정되었다.

2.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內容

경제체제개혁의 측면에서 중국공산당 14全大의 「報告」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첫째, 국유기업 특히 대중형기업의 경영체제를 전환하여 기업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그 활력을 증강시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중심부분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하는 관건이다. 순조로운 소유관계의 변화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시하고 기업의 자주권을 인정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자주경영과 독립채산을 실시하는 법인의 실체로서 시장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한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가하도록 책임을 맡긴다.

둘째, 시장체제의 육성을 가속화한다.

상품시장의 발전 특히 생산재시장의 발전에 주력하고 채권과 주식 등의 유가증권 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기술, 노무, 정보, 부동산 등의 시장을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체제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시장제도와 법규제정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호, 촉진한다. 가격개혁은 시장의 성장과 경제체제개혁의 관건으로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체제를 수립한다.

셋째, 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심화한다.

8) 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四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2年 10月 21日.

국가·집체·개인 3자간의 이익을 다방면에서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와 기업, 중앙과 지방의 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윤과 세금의 분리와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복수세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임금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여 기업과 사업체, 기관 등의 특징에 적합한 임금제도와 정상적인 임금인상제도를 수립한다. 실업과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확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주택제도를 개혁한다.

넷째,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기능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기업에 속하는 직권에 대해 각급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에 이전한 권한을 중지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기능은 주로 통일적인 계획의 입안, 정책의 장악, 정보제공, 조직상의 협조, 검열과 감독을 하는 것이다. 정부기능의 전환은 상부구조를 경제기초에 적응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개혁을 심화시키기 어렵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어렵다.

다섯째, 대외개방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국외의 자금, 자원, 기술 및 관리경험을 흡수하여야 한다.

經濟特區, 沿海開放都市, 沿海經濟開放區의 건설을 확대하고 내륙의 省, 自治區의 대외개방속도를 가속화하여 전방위적인 개방의 구도를 형성한다. 아울러 외자이용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역동적인 방법으로 투자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외국인의 투자와 경영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충분한 법률적 보장을 하는 정책적 배려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대외무역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외향형경제를 발전시킨다. 수출을 확대하고 상품수출구조를 개선하며 동시에 수입을 적절히 늘려 간다. 대외무역체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부합하고 국제무역규범에 맞는 새로운 대외무역체제를 신속히 확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업을 중시하며 기초공업과 기초시설 및 3차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임으로 농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농촌경제를 전면적으로 진흥시켜야 한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관개수로 등 농업시설을 증설하여 집약적 농업경영의 수준과 생산총량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통·통신·에너지원·주요원자재와 수력자원 등에 관련된 기간산업과 기초공업의 개발과 건설을 가속화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업·금융·보

협·관광·정보·법률과 회계감사·서비스 등의 3차산업을 발전시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3.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理論問題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 이래 1992년 10월 14全大에 이르기까지 중국경제체제의 진전과정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개관할 수 있다. 즉, 계획경제를 위주로 한 시장조절의 보충(12全大 1982. 2) →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12期 3中全會 1984. 10) → 계획과 시장이 통일적으로 내재된 계획적 상품경제 (13全大 1987. 10) →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상호결합(13期 4中全會 1989. 6) → 사회주의시장경제(14全大 1992. 10)⁹⁾

위와 같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현대화를 위한 경제체제의 모델로 확정되는 14全大를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이론과 견해가 발표되었으며, 그 논의의 범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념을 위시하여 상품경제와의 관계, 계획경제와의 관계 그리고 신체제의 확립 등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을 위한 광범위한 이론영역을 포괄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내용을 쟁점이 되는 이론적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⁰⁾

가. 社會主義市場經濟’의 概念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제기는 역사상 초유의 것으로 당연히 어떻게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념을 정의할 것인가에는 상이한 인식이 존재하고 중론이 분분하다.

관점1 :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바로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이다. 중국이 개혁중에 발전시켜 온 시장경제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이며 사회주의국가에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 제기방식은 결코 중국의 시장경제발전에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9) 高路, 같은 글, pp. 446~461 참조.

10) 이하의 내용은 武京閩·趙 蕾, “社會主義市場經濟’問題討論綜術”, 「人民日報」, 1993年 4月 26日, 第5面的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가의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관점2 :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다양한 경제성분의 시장경제를 포괄한다. 사영 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역동적인 것으로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활기찬 역할을 한다.

관점3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조건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기본 제도와 결합된 시장체제이며 공유제를 기초로 한 시장경제체제이다. 중국이 확립한 사회주의시장체제의 착안점은 공유제의 개혁에 있다. 특히, 국유중대형기업경영의 체제전환을 실현하고 기업을 시장으로 인도하여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킴으로써 기업의 체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이다.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는 공유제내에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유제를 주체로 한 시장경제를 벗어나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말은 입에 담을 수도 없다.

관점4 :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일종의 경제제도 또는 경제제도분야의 내용을 함축한다. 이러한 경제제도하에서 시장은 사회자원배치의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발전중의 하나의 특정한 단계이며 시장경제제도의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이다.

관점5 :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의 계승과 발전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계획적 상품경제의 제기방식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이론상 더욱 철저하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경제운영이 시장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둘째, 자원배치의 방식을 더욱 중시하고 경제체제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필연적으로 모든 생산요소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어떤 학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의미에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국가의 영도, 사회주의의 견지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社會主義市場經濟'의 一般性和 特殊性

1) 시장경제의 일반성

이 문제에 대한 이론계의 견해는 비교적 일치되어 있다. 시장경제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는 결코 근본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징을 가진다. ①기업행위의 자유화,

②자원배치의 시장화, ③거시적 통제의 간접화, ④시장체계의 완비화, ⑤경영관리의 법제화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수성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수성은 사회주의제도의 기본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이하 몇가지분야에서 표현된다.

- ①소유제구조 : 公有制를 주체로 하고 개체, 사영, 외자경영을 보조로 하되 각기 우월한 점을 발휘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며 공동으로 발전한다.
- ②분배제도 : '노동에 따른 분배'형식을 주체로 하고, 효율과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여 합법적인 소득격차를 인정하되 빈부의 양극분화를 방지하여 점차 공동의 부유함을 실현한다.
- ③거시적 조절통제 : 국가의 시장에 대한 조절통제는 두터운 물질적 기초를 갖고 있고 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통제능력이 강하므로 더욱 효과적으로 계획과 시장의 두 가지 경제수단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다. 市場經濟와 商品經濟의 關係

관점1 : 상품경제는 시장경제이며 양자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시장이 없는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은 생각할 수 없고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없는 시장경제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품경제와 시장경제는 동일한 개념이다.

관점2 : 상품경제가 있으면 시장경제가 있으며 양자는 동일한 보조로 평행하여 발전하고 함께 생멸한다. 시장경제는 상품경제의 자기실현방식이다. 단순한 상품생산에는 상응하여 단순한 시장이 있고 발달한 상품생산에는 발달한 시장이 있고 고도로 발달한 현대상품생산에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시장이 있다. 이처럼 '단순한 시장경제', '발달한 시장경제', '현대시장경제'가 있다.

관점3 : 상품경제가 완전히 시장경제와 동등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견해가 있다.

- ①상품경제의 발전수준과 시장의 자원배치범위에 의한 시각
시장경제는 상품경제의 고급단계이고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된 상품경

제이다. 상품경제가 미발달한 조건하에서 시장의 역할은 국부적인 범위에 국한되며 사회자원의 주요배치역을 맡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시장경제를 형성했다고 할 수 없으며 오직 상품과 생산요소가 전사회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시장이 전사회적 범위에서 자원배치의 조절작용을 하는 조건하에서만 시장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

②시장의 자원배치역할에 의한 시각

전통적인 체제하에서도 상품경제와 상품교환이 존재했고 시장도 존재하였으나 당시의 시장은 자원배치에 대해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오직 시장이 직접 사회경제생활을 조절할 수 있고 자원배치에 있어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경제가 비로소 시장경제이다. 그러므로 ①의 관점에 찬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의 상품경제발전수준은 아직 낙후되어 있고 고도의 사회화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경제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점4 : 상품경제와 시장경제가 비록 모두 일종의 가치교환을 본질로 하고 자본의 가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운동의 개괄이지만 양자간에는 구별이 있다. 상품경제의 총차는 시장경제보다 크며 그것은 제품경제와 동일한 총차에 속하고 상이한 경제운동의 특징을 본질적인 면에서 개괄한 경제제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와 같은 일종의 경제운영체계이며 경제제도 가운데 활동하고 경제제도가 이용하는,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수단의 체계이다. 따라서, 상품경제는 시장경제를 포함하며 시장경제는 상품경제의 일 구성부분이다.

관점5 :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조건하에 국부적인 범위내에서만 시장경제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사회 이전의 단순한 상품경제시대에는 자연경제가 주도적이었고 시장경제는 국한적인 범위내에서 자원배치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중국의 경우도, 시장경제체제 이전에 시장경제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며 그 당시 상품경제의 발전이 불충분하고 시장경제의 미발달로 국부적인 범위내에서 자원배치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라. 計劃과 市場의 問題

계획과 시장은 모두 자원배치의 방식이며 경제운행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종류의 조절수단을 운용하는 것은 사회화된 대생산과 상품경제발전의 내재적 요구일 뿐 결코 사회의 근본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계획과 시장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관점1 : 계획과 시장 양자중에 시장은 더욱 근본적인 위치에 있다. 시장은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키고 자원의 미시적 이용의 효율을 높이며 자금의 형성과 유통을 가속화하고 위험을 분산시켜 경제발전의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계획은 시장의 작용하에 거시적 조절기능과 미시적 지도기능을 발휘한다.

관점2 : 계획과 시장은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서로 배척하고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상이한 단계에서 각기의 역할과 우월성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주로 총체적인 거시적 조절통제, 총량통제, 구조조정, 경제적 배치 등의 방면에서 작용하고 중대한 자원과 사회이익의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에, 시장은 주로 미시적 경제영역, 일상적 생산경영활동, 관련된 자원배치 등의 방면에서 작용한다.

관점3 :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결코 계획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을 정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적인 계획관념을 혁신하고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를 부정하며 가치규율에 기초한 계획을 확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반드시 시장경제의 기본규율에 따라야 한다.

마.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確立

1) 주요장애의 극복과 발전

中國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은 장차 오랜 역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로는 아래의 몇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① 거시적 조절통제체계가 기존의 계획체제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여 방식, 수단, 역량에 있어 시장체제의 육성과 운영의 객관적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다.

- ② 시장조절체계가 계획경제체제의 제약을 과도하게 받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
- ③ 기업이 독자적으로 시장을 향하고 자주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결핍되어 있다.
- ④ 시장조직과 시장구조가 불합리하고 시장규율이 미비하며 또한 통일되지 않아서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⑤ 시장의 육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⑥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립시키고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으로 보던 전통적 관념이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속박하는 주요한 사상적인 장애이다.

2) 신체제의 확립

- 관점1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은 다음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우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미시적 주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즉, 시장의 수급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주경영, 독립채산, 자기제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시장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 그 다음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경제수단을 주로 하는 거시적인 계획적 조절 통제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 관점2 : 가격개혁과 기업개혁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관건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가격개혁을 추진하여 시장정찰제와 가격비교체계를 형성하는 한편 기업개혁을 가속화하여 기업이 자주경영, 독립채산을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점3 :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쟁적인 시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과 시장의 관계는 기본적인 경제관계이고 각종 경제활동은 모두 시장경제의 틀속에서 진행되며 시장조절을 주로 한다. 완비된 시장체계가 있어야 한다. 시장은 사회자원배치의 주요방식이고 시장경제의 전제는 가격의 개방이며 가격체제는 시장체제의 핵심이다.
- 관점4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는 적극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외국시장경제의 경험과 이론을 학습하고 참고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방침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경험을 총결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개혁방안을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여러가지를

실시하여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시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상에서 볼 때, '사회주의시장경제'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통일된 이론이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 중국이 모색해온 중국적 특색의 경제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개방성과 풍성함을 보여주고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논의가 과도하게 과열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확립에 유익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실질과 구성의 윤곽을 밝혔는데, 國家體制計劃委員會 主任인 李鐵映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10가지 요점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기본골격으로 제시하였다.¹¹⁾

①소유제구조

국유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기초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개체, 사영, 외자경제 등 여러가지 경제요소가 장기간 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소유제구조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②현대적인 기업제도

자산권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기업을 분리한다. 국유기업은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이자 경영자로서 자주경영, 독립채산, 자기발전, 자기제약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현대적 시장체계와 가격형성체계

법률제도의 완비, 전면적인 개방, 공정경쟁의 시장체계 특히 생산요소의 시장을 확립한다.

④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그밖의 분배방식을 보충으로 하며 효율과 공평을 결합하여 사회전체성원의 공동의 부유를 실현한다.

⑤거시경제에 입각한 간접적 조절통제체계

경제정책과 경제균형수단을 통해 거시적으로 경제총량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11) 李鐵映, "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基本框架", 「人民日報」, 1993年 5月 10日, 第2面 참조.

적 경제구조의 우수성을 실현한다.

⑥국제관세에 맞고 국제경쟁과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대외개방체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요구에 따라 외환율과 관세 등의 경제수단을 적절히 이용한다. 국제분업, 국제교류에 참가하고 국내외 자원과 생산요소의 상호 유통으로 국내외의 시장을 상호연계한다.

⑦농촌시장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신체제

농가생산도급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를 위주로 한 통일과 분산의 이중경영체제를 안정화, 발전시키고 농촌의 사회서비스체계와 鄉鎮企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⑧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

정부·기업·개인의 경제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제관계·경제운영 및 관리의 규범화·제도화·법제화를 실현한다.

⑨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범적인 경제관리구조를 확립하여 사무처리권과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조정한다.

⑩경제체제와 과학기술, 교육 등 그밖의 분야를 결합하는 개혁을 진행한다.

결국 위의 10 가지 요점은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었으며, 이는 또한 이후 1993년 11월 14일 중국공산당 14期 3中全会에서 채택된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確立的 若干에 問題에 관한 決定」에서 제시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III.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法制化

중국은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14中全会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 현대화를 위한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確立'으로 확정 한 이후 곧 이어 1993년 3월 제8기 전인대 제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93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중국은 구헌법 제15조의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계획경제의 종합적 균형과 시장조절의 보조 작용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비례에 따른 조화있는 발전을 보증한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국가의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를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조절을 완성한다.", "국가는 법에 의하여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금한다."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개정을 통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실시에 대한 명문화와 경제입법에 대한 강조는 앞서 중국공산당 14中全会에서 확립된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確立"이라는 시장경제추구노선을 법제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법제화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확고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1.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法制的 基本方向

기존하는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국 성립후 40년간의 경제체제를 변혁하는 역사적 전환으로 이러한 경제체제의 개혁은 법률제도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함과 함께 중국의 법제관념에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확립과 발전을 위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법제관념의 변화가 필수적이었고 그러한 변화의 요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관념영역의 변화를 요구하였다.¹²⁾

1) 계급투쟁관념→이익조정관념

12) 張晉藩, "中國的市場經濟與法制建設", 韓國法制研究院講演資料(1994년 10월 7일), p 1. 참조.

- 2) 정책치국관념→의법치국관념
- 3) 법률허무관념→법률신앙관념
- 4) 의무본위관념→권리본위관념
- 5) 官貴民輕관념→공민본위관념
- 6) 소송경시관념→소송권리관념
- 7) 법률객체관념→법률주체관념
- 8) 권력복종관념→법률지상관념

1992년 12월 중국 最高人民法院 院長인 任建新은 全國政法工作會議에서 시장경제는 곧 법치경제라는 논지의 연설을 하였는데 이로 부터 시장경제와 법제건설의 관계가 심도있게 제기됨으로써 중국은 한편 시장경제의 확립과 발전은 법제의 보증과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고 동시에 법제의 개혁과 완비는 시장경제의 진전과 상호의존적임을 인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 일원화된 경제주체의 다원화를 위한 법률적 조정

계획경제하에서는 국가가 경제를 전면적으로 농단하고 경제영역중의 모든 것이 공법의 범위에 속하며 국가가 사법에 간여하는 범위 또한 부단히 확대됨으로써 경제주체는 국가이며 기업은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경제주체의 다원화를 강조한다. 즉, 국가가 행정권력의 주체가 되는 때에 기업은 시장경제의 주체에 속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주체로 시장에 참여할 때만이 비로소 시장경제의 주체 즉, 민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여건하에서 기업은 독립된 경제주체가 되어야 한다. 경제주체의 다원화는 예컨대 국가와 기업의 소유권관계·채무관계, 각종 소유제간의 평등관계와 같은 복잡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이는 곧 법률의 조정, 확인과 보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는 법률을 통해 경제운영을 조정하고 다원화된 경제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법률적 보증이 없이는 현대화된 기업제도도 존재할 수 없다.

둘째, 법제의 시장경제의 확립과 발전에 대한 역할

시장경제는 법제적 보장을 통하여 확립될 수 있으며 법제는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장한다.

- ①대규모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과 투자환경을 보증한다.
- ②인민대중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경제건설에 대한 열정을 유

13) 張晉藩, 같은 글, pp. 2~3 참조.

도한다.

- ③양호한 국외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경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④시장경제의 운영규칙을 확립하여 불공정거래, 부정경쟁, 사기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 ⑤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 정부의 거시조절을 시장체계의 육성과 생산수단시장, 소비자시장 및 각종 전문시장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주체의 다원화를 위한 법률적 조정의 필요성과 법제의 시장경제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조는 곧 사회주의시장경제법제의 기본방향을 초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1993년 11월 14일 중국공산당 14期 3中全會上에서 채택된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確立的 若干에 問題에 관한 決定」은 이를 위한 법제건설의 목표를 헌법에 규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상법, 형사법 및 관련국가기관과 행정관리분야의 법률을 완비하여 금세기말까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법률체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¹⁴⁾

이는 곧 중국이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완성의 과정을 경제법제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全人大 常務委員會 부위원장인 田紀雲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시장경제법제화의 기본방향으로 다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⁵⁾

- ①공유제를 주체로 각종 경제성분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침하에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심화를 통한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확립
- ②시장체계의 발전과 완비를 통한 시장메커니즘의 충분한 역할발휘
- ③정부직능의 전환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의 거시조절체계형성
- ④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한 대외경제체제확립
- ⑤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는 효율우선과 공정성을 겸비한 분배제도 및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위와 같은 시장경제체제화의 주요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상응하는 법률제도와 법률체계의 확립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완

14)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法制日報」, 1993年 11月 17日, 第2面 참조.

15) 田紀雲, “加強法制建設推動經濟發展和社會全面進步”, 「法制日報」, 1995年 10月 30日, 第1面 참조.

성이라는 거대한 공정에 시장경제의 법제화는 불가분의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2.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法律體系의 確立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은 계획경제하의 법률에 대한 개폐작업이 불가피하였고 이는 곧 헌법과 관련부문법을 포함한 일련의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제정작업에 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시장경제체제가 정형화된 후의 법률표현형식을 망라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요점은 국가의 입법기관을 통해 거시조절, 시장주체 및 시장규칙 등에 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 이를 보장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93년 7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는 시장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할 법률체계에 대한 요점을 정하였는데 이는 곧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골간을 정하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 분야로 이를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

① 시장주체의 규범화

주로 시장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시장주체가 시장경제중에서 자주적 경영·독립채산·자기발전 및 자기약속의 경영체제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기업이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경제관리부처와 생산자·경영자·소비자의 관계를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는 회사법·합자법·파산법·기업재산권법 등이 속한다.

② 시장질서의 유지

시장주체의 관계조정을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독점금지법·제품품질법·소비자권익보호법·증권거래법, 부동산거래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16) 張晉藩, 같은 글, pp. 4~5 참조.

③ 경제발전의 촉진

정부의 거시조절의 개선 및 강화를 통해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법·투자법·은행법·가격법·화폐법·외환관리법·외채관리법 등이 이에 속하며 아울러 정부의 경제관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유자산관리법·예산법·통계법·회계검사법·세수징수관리법·상공행정관리법 등이 필요하다.

④ 사회보장

의료보험·실업보험·양로보험·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법과 노동법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⑤涉外관련

소위 전방위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투자보호법·대외무역법·세관법·涉外세법·涉外증권관리법 등의 제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특정한 소수의 몇몇 법률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되며 시장관계와 관련된 민·상·경제법·행정법 등의 법률체계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구성체계를 수립하여야 함이 제기되었는데, 비교적 완전한 시장경제법률체계의 확립을 위하여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 분야로 입법대상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⁷⁾

1) 시장주체법

시장의 조직형태와 지위에 관한 법률규범을 말하며 그 목적은 시장주체의 다른 형식을 제시하고 그 법률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하에서 정부가 경제의 주체였으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시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과 공민이 되어야함을 말한다. 이 분야의 법률로는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따라 제정하는 회사법·합작사법, 국유·집체·사영기업법 및 파산법 등이 포함된다.

17) 王保樹, “社會主義市場經濟與民法學經濟法研究”, 「中國法學」, 第3期, 1993年 6月, pp 23~25 참조.

2) 시장주체행위규칙법

시장주체의 거래행위에 관한 법률규범으로 시장주체에게 충분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때에 법제는 기업행위의 규칙을 '은폐'에서 '공개'로 변모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물권법·채권법·어음법·보험법·해상법 등이 이에 속한다.

3) 시장관리규칙법

시장에 평등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법률규범을 말한다. 그 내용은 경영주체로 하여금 각종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독점금지법·제품책임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창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4) 시장체계법

시장에 따른 개별적인 시장규칙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시장체계의 확립을 통해 시장경제의 발달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재시장·자재시장·금융시장 및 증권시장·노동력시장·기술시장 등 시장전반에 걸쳐며 화물거래법·신용대부법·증권거래법·노동시장관리법·기술무역법·선물거래법 등을 포함한다.

5) 시장거시조절법

정부의 시장에 대한 거시조절의 실시를 위한 법률규범을 말한다. 시장경제는 방임경제가 아니며 정부는 필요한 때에 적절히 공권력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합리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에선 예산법·은행법·세법·투자법·산업정책법 등이 속한다.

6) 시장보장법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법률규범을 말한다. 시장경제실시후 자원배치의 운영방식의 변화로 말미암은 국영기업근로자의 실직사태는 사회안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취업법 및 임금법과 사회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3.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法制化의 前提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 조속히 시장경제법률체계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관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량의 입법실적이 곧 시장경제법제의 완성도를 반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장경제법제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는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원칙처럼 지켜져 온 입법관념에 대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획경제하에서 고수해 왔던 公權優越主義를 私權優越主義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공법과 사법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국가공권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민법상의 사권을 경시함으로써 공법적 수단으로 사법관계를 조정하고 행정권력과 행정수단으로 직접 경제를 운영하여 왔다. 비록 지난 1986년에 「民法通則」을 공포하여 인민의 사권에 대한 법제적 보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사법우선의 원칙', '사법자치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 등의 시장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원칙들이 인민의 실제경제생활에서 변모된 법제관념으로 착근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¹⁸⁾

중국은 전통적으로 법률을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 특유하는 행위규칙으로 통치계급의 의지를 실현하며, 국가가 제정 또는 인가하고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 집행을 보장하는 통치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규범”¹⁹⁾으

18) 江平, “完善市場經濟法律制度的思考”, 「中國法學」(北京), 1993年 2月(第1期), pp. 7~8 참조.

19) 金鉉雨, “中國의 社會主義法制建設에 관한 略論”, 「법제연구」, 제7호(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 218-219 참조.

로 정의하여 왔고 이에 따라 私法의 存在 내지는 優先의 문제를 인정하지 아니 함으로써 상술한 私法의 몇가지 원칙의 적용이, 그 경제발전에 미치는 지대한 중요성에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함에 따라 시장경제는 자유경제를 의미하며 평등·자유와 소유권불가침 등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행정권이 시장주체의 권리를 결정하는 사권침해의 폐단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으로써 사권의 의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르면, 특히 시장경제규칙의 측면에서 공민과 법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때에는 권리의 범위에 여지를 두어 권리의 주체를 위해 법률에 누락된 권리와 법률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권리에 대한 보류를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엄격한 제한요건을 설정하되 열거식의 제한방법을 취하여 법률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요구는 공민의 기본권존중과 관련하여 헌법규정에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사실은 “법률이 금지하지 아니한 자유롭다.”고 하는 사권에 대한 보호와 중시가 시장경제입법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법과 사법의 분리 및 사법우선 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또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법과 사법의 조정대상과 범위는 각각 다르고 일반적으로 원칙 또한 다르므로 공법영역의 강제적 원칙과 방법을 평등호혜의 사법영역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것은 행정권이 시장경제의 주체인 사인과 기업법인 등의 민간영역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하는 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킨다. 아울러 사권의 독립적 지위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및 사권의 불가침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과 공민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²¹⁾

요컨대, 사권의 중시 및 사법우선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권리위주의 법제 관념이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시장경제법제화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20) 郭道暉, “市場經濟與法學理論, 法制觀念的變革”, 「法學」(上海), 第2期(1994年 4月), p. 3 참조.

21) 劉升平等, “市場經濟與法理學的更新和變更”, 「中國法學」, 1993年 8月(第4期), p. 5. 참조.

IV.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立法의 實際

1. 概 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1979년부터 금년 1995년초까지 제정한 「法律」 및 법률문제에 관한 「決定」은 모두 25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여건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확정한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14全大 이후에 제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國務院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도합 700여건을 상회하여 최근 2년간 全人大와 그 常務委員會는 거의 13일마다 한 건의 법률을 제정하고, 國務院은 전체기간중 평균 6일마다 한 건의 행정법규를 제정한 셈이 된다.²²⁾

중국의 이러한 입법과열현상은 "제때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률과 법규를 개폐하고", "입법의 진도를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중국공산당 14期 3中全會의 「決定」²³⁾에 충실한 결과라고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시장경제법률체계수립을 위한 마스터프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현 회기(1993~1997)내에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골격을 대체로 형성하고 동시에 기타 분야의 법률을 제정, 완비한다는 5개년 입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과열현상은 당연히 입법의 질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시장경제법률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졸속적인 입법은 마치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체제개혁시기에 '多變' '大量' '混亂'으로 표현되던²⁴⁾ 입법상황의 특징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全人大 常務委員會 秘書長인 曹志는 全人大幹部研修會議에서 입법진도의 가속화에 따른 입법의 질적향상문제에 대해 논급하면서 첫째,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입법시기를 파악할 것. 둘째, 법률초안작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 셋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법률초안에 대한 심의의 질을 향

22) 「法制日報」, "市場經濟法律體系框架日趨明哲完善", 1995年 10月 19日, 第2面 참조.

23) 주 14)와 같음.

24) 袁建國, "改革時期經濟立法的特点·現狀及策略", 「法學研究」(北京), 第1期(1987年), p. 1 참조.

상할 것 등의 3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울러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독려한 바 있다.²⁵⁾ 이는 중국의 입법기술수준의 일면을 짐작하게 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입법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자기점검이라고 할 것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²⁶⁾ 중국은 1992년부터 1995년말 현재까지 「법률」의 경우 1992년에 8건, 1993년에 16건, 1994년에 11건, 1995년말 현재 16건 등 도합 48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장경제법률체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법률로는 노동조합법(1992년 4월 3일 제정)을 포함하여 보험법(1995년 6월 30일 제정)에 이르기 까지 29건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3분의 2를 점하는 것으로 중국이 기울여 온 시장경제입법에 대한 집중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하에서는 그 가운데서 비교적 중요한 몇가지 법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입법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례로 삼고자 한다.

2. 國有企業法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통칭 全民所有制企業으로 불리우며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주경영·손익부담·독립채산을 하면서 상품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유기업을 규율하는 주요한 법령으로는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전민소유제공업기업의경영구조전환조례」, 「국유기업 재산감독관리조례」 및 「전민소유제공업기업파산법(試行)」 등이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체계에 있어 특히 시장주체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관건이 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에 길들여진 국유기업 즉, 전민소유제기업을 여하히 시장경제체계에 맞도록 전환하는나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이 제정하여 199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민소유제공업기업의 경영구조 전환조례」는 시장주체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전민소유제공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활력을 증강하는 데에 있고 그 목표는 전민소유제공업기업을 시장의 요구에 적응시켜 자주경영·독립채산·자기발전·자기제약을 하는 상품생산 및 경영의 주체가 되

25) 曹志, “搞好立法, 加强學習”, 「法制日報」, 1995年 6月 20日, 第6面 참조.

26) 이하 「중국의 최근제정법률일람표」를 참조바람.

게 하는 것이다(제2조). 「조례」는 전민소유제기업에 상당한 경영자유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경우와 비교하여 주목할만한 진전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국가가 부여한 경영관리재산에 대해 점유·사용 및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제6조).
- ②국가의 거시조절과 시장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방침과 제품생산을 결정하고 업종에 관련된 경영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제8조).
- ③생산하는 일용공업소비품 또는 생산수단 및 제공하는 가공·수리·기술협력 등의 노무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가진다(제9조).
- ④정부가 판매를 규제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제10조)
- ⑤기업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처, 구입방식, 수량과 종류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제11조).
- ⑥전국적인 범위에서 대외무역기구를 선택하여 수출입을 할 수 있고 외국기업과 상담할 수 있다(제12조).
- ⑦자금과 토지사용권·공업재산권 및 비특허기술 등을 사용하여 지역·업종에 따라 투자하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허가를 받아 해외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제13조).
- ⑧고정자산에 대해 임대·저당설정 또는 유상양도를 할 수 있다(제15조).

이와 함께 「조례」는 기업에 고용권·인사관리권·보수조정권·내부조직설치권 등의 경영자주권을 대폭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곧 국유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시장메커니즘에 적응하기 위한 전향적인 입법조치로 평가된다.

3. 市場競爭法

가. 市場競爭의 意義

중국은 전통적인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함에 따라 과거 오랜 기간 배척되고 속박되어온 경쟁메커니즘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대체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의 두가지로 나누어 경쟁메커니즘의 역

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경쟁을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운영메커니즘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격렬한 시장경쟁중에서 사업자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여 기술개선·원가절감·품질향상·서비스개선을 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전사회의 기술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사회전반에 활력이 증강된다. 이에 따라 경쟁메카니즘속에서 사업자는 부단히 분화하여 적자생존을 거침으로써 각종 생산요소가 경제영역의 유동방향과 액수비율에 따라 우성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경쟁은 심지어 시장경제의 영혼으로까지 간주된다.²⁷⁾

후자의 경우는 대개 두 가지로 표현된다. 즉, 첫째는 적자생존의 결과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야기함으로써 일정수준에 이르면 독과점행위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시장경쟁구조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각양각색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왕왕 일부 경영자가 성실신용의 상도덕에 위배되는 수단으로 경쟁을 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정경쟁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두가지 고질병으로서 경쟁메카니즘 자체의 역량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고 국가의 간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²⁸⁾

사실상 중국의 이상과 같은 경쟁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하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경쟁메커니즘에 대한 관점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 데, 특히 후자의 소극적인 면에 대한 우려는 중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요한 입법배경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不正競爭防止法

중국은 1993년 9월 2일 5장 33조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當競爭法)을 제정하고 이를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장려,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보장(제1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은 거시적 경제관리와 함께 미시적 경제행위

27) 全國普及法律辦公室, 「社會主義市場經濟法律知識講話」(人民日報出版社:北京, 1994年 12月), p. 116 참조.

28) 全國普及法律辦公室, 같은 책, pp. 116~117 참조.

의 규범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은 전술한 “필수적인 국가의 간여”가 깊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궤도수정의 시기에 처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미숙으로 인한 구조적인 약점과 소극적인 면이 노출됨으로써 시장거래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부정경쟁행위는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사회경제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의 경제수뇌부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⁹⁾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규범화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률규정에 나타난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모방행위(제5조)
- ②공공기업 또는 독점사업자의 상품구매제한(제6조)
- ③행정권력을 남용한 한정구매 및 상품유통제한(제7조)
- ④뇌물수수에 의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유도(제8조)
- ⑤오해하기 쉬운 허위광고(제9조)
- ⑥상업비밀의 침해(제10조)
- ⑦경쟁상대를 배제한 부당한 저가판매(제11조)
- ⑧끼워팔기(제12조)
- ⑨불공정한 유사판매(제13조)
- ⑩경쟁상대의 명예훼손(제14조)
- ⑪입찰담합행위(제15조)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법률적 제재를 받고 그 행위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는 각급정부의 상공행정관리기관과 그밖의 관계기관이 하지만 국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소위 ‘사회적 감독’을 장려, 지원한다.

위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중에 제6조와 제7조는 독점행위에 속하고 제15조는 연합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이들을 함께 규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금

29) 「法制日報」, “保障社會主義市場經濟健康發展的重要法律”, 1993年 9月 4日, 第1面 참조.

지규정보다는 우선적으로 불공정경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제정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법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제한행위와 입찰담합행위가 실제경제활동에서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勞動立法

가. 意義

시장경제법률체계중에 민법·경제법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사회보장법 등의 법률은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화」의 성공여부는 일련의 완전한 노동법규의 제정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노동관계를 조정·공고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노사 쌍방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내부에서 노동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부조화한 때에 당해 시장은 자기발전을 이룰 수 없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으며 아울러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써 격렬한 대항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장경제발전에 미치는 불량한 영향을 지적하고 그 입법적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³⁰⁾

나. 「勞動法」의 制定

중국은 1994년 7월 5일 제8기 全人大 第8次常務委員會에서 「노동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법」은 사회주의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노동관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의 기준을 확정한 기본법이며 과거 부재하였던 노동입법의 공백을 메운 획기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중국에서 「노동법」이 부재하였던 것은 아이러니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과거 중국의 법률허무주의적인 관념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

30) 史探徑, “論社會主義市場與勞動立法”, 「法學研究」(北京), 第1期(1994年 2月), p. 56 참조.

법」의 제정은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함에 따른 불가피한 입법적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노동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며 노동력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법」은 13장 170조로 구성되어 있는 데,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관계의 확립과 조정, 근로기준의 제정과 집행, 노동기관의 직책과 규범 등 노동관계의 주요부분을 망라하고 있고, 취업촉진·노동계약과 단체협약·근로시간과 휴식·임금·여성근로자와 미성년근로자의 보호·직업훈련·사회보장과 복지·노동쟁의·감독과 검사·법률적 책임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법」은 다른 한편 과거 의무분위의 관념이 권리분위의 관념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법제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총칙중의 몇몇 규정에서 두드러진다. 즉,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데 예컨대, 취업과 직업선택의 권리·노동보수취득의 권리·휴식과 휴가의 권리·노동안전위생의 권리·직업훈련을 받을 권리·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노동쟁의를 제기할 권리 등(제3조)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용자와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하여야 하며(제4조, 제5조), 노동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자와 평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제7조, 제8조).

중국은 「노동법」이 '명확한 시장지향'과 '선명한 국정인식'이라는 두가지의 현저한 특징을 갖추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법률로 자평하고 있는 바,³¹⁾ 이 법의 시행을 통해 노동관계전반에 걸친 법제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입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31) 全國普及法律辦公室, 같은 책, p. 314.

V. 맺는 말

중국을 과거 십수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의 경험을 종합하고 스스로 전통적인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켰다. 이는 비단 경제체제와 경제구조에 대한 전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변혁이며 기존의 사고방식과 사회구조 등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걸치는 중대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³²⁾ 사실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는 이미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소위 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체제에 대한 혁명적 변화는 곧 이어 상부구조영역(이에는 법제는 물론 정치체제를 포함한다)에도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예측을 대내외적으로 무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져올 사회주의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였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시장경제'는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통한 소위 '사회주의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하나의 경제수단으로 의의를 가질 뿐이며 한 사회의 체제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요컨대 사회주의의 조건하의 또는 사회주의의 제도하의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즉,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영도와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고, 경제적으로는 공유제를 주로 하되 기타의 소유방식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원칙과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로 하되 기타의 분배방식을 보충으로 삼는 원칙하의 시장경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론상 시장경제는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소유방식과 기타의 분배방식의 영역에서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보충적인 영역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미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작용하고 있고 경제활성화의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층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가의 거시조절을 빈번히 강조하거나 다른 한편 사회주의정신문명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하부구조의 변화가 상부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를 법제경제로 정의하고 시장경제의 성패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의 완비(健全法制)에 있다는 인식하에 '法制建設'을 극력 제창하면서 시장경제입법에 주력하여 왔다. 실제로 '法制建設'은 개혁

32) 江澤民은 중국공산당 14全大의 「報告」에서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 건립'은 한바당의 革命이라고 말하였다.

· 개방정책을 선언한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에서 鄧小平이 “법이 있으면 의거할 수 있고, 법이 있으면 의거하여야 하며, 법집행은 엄격하여야 하고, 위법은 반드시 추궁한다.(有法可依, 有法必依, 執法必嚴, 違法必究)” 는 기본방침을 제기한 이래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공여부를 담보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중시되어 왔고, 이에 따른 다량의 입법실적과 법률보급정책은 과거 ‘黨治’ 또는 ‘人治’에 의한 통치행태를 ‘法治’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법제관념의 변혁을 가져왔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법제경제’라는 명제는 상당부분 이미 형성된 법치중시의 법제관념을 토대로 제기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법치의 관념이 경제를 포함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착근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극력 ‘法制建設’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그 이면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나 적어도 중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법제화추진은 중국이 법치의 중요성과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향후 중국이 ‘法治’에 바탕한 ‘社會主義市場經濟’를 지향하면서 시장경제의 법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변화된 인식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첫째, 고도로 집중된 사회주의계획경제→ 국가정책·계획이 거시적 조절을 주로 하는 시장경제.

둘째, 정부와 기업의 일체 및 기업의 정부예속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기업의 자주경영·독립재산, 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보장

셋째, 유일한 공유제의 원칙→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구조의 장기적인 공동 발전.

넷째, 유일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는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

다섯째, 평균주의적 공동부유의 실현→ 일부 지역·기업·사람의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을 통한 우선적인 부유의 실현인정

이러한 기준의 설정은 사실상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성을 추구하면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제시한 목표이기도 하며, 따라서 또한 향후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법제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입법기준으로 일정기간³³⁾ 그 의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중국은 최근에 오는 2010년까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95’計劃和2010年遠景目標的建議”(1995년9월28일中國共產黨第十四屆中央委員會第5次全體會議通過), 「法制日報」, 1995年 10月 5日字 참조.

중국의 최근제정법률일람표

(1992.1 ~ 1995.10)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2. 4.3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법	44조	개 정
	노동조합법	42조	
	부녀자권익법보장	54조	
9.4	세수징수관리법	62조	
	특허법	69조	
11.7	광산안전법	50조	
	해상법	278조	
2.28	측량법	34조	
1993.2.22	제품품질법	51조	
	국가안전법	34조	
	상표법	43조	개 정
3.29	헌법	9조	개 정
31	마카오법특별행정구기본법	145조	
7.2	농업법	66조	
	농업기술보급법	30조	
	과학기술발전법	25조	
9.2	부정경쟁방지법	33조	
10.30	경제계약법	47조	
31	소비자권익보호법	55조	개 정
	개인소득세법	14조	
	공인회계사법	46조	
	교사법	43조	
12.29	적십자법	28조	
	회사법	230조	
1994.3.5	회계법	30조	
22	대만동포투자보호법	15조	
5.12	예산법	79조	
	국가배상법	35조	

연월일	법률명	조문수	비고
	대외무역법	44조	
7.5	노동법	107조	
	도시부동산관리법	72조	
8.31	중재법	80조	
	회계검사법	51조	
	모자보건법	39조	
	광고법	49조	
10.27	행형법	78조	
1995.2.28	법관법	49조	
	전국인민대표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	53조	개정
	세수징수관리법	62조	개정
	인민경찰법	52조	
3.18	교육법	84조	
	인민은행법	51조	
5.10	상업은행법	91조	
	예비역군관법	56조	
	어음법	111조	
6.30	담보법	96조	
	보험법	152조	
8.29	체육법	56조	
	대기오염방지법	50조	개정
10.30	민용항공법	214조	
	식품위생법	57조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77조	

중국의 최근입법동향 (1992.2. ~ 1995.10.)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2. 2.1	어업행정처벌절차규정	29조	제 정
3.8	수출화물원산지규칙	14조	同
14	의무교육법시행규칙	46조	同
18	국고권에관한명령	14조	同
	수출입관세에관한명령	42조	개 정
28	외국선박검사기구의상주대표기구설립에 관한명령	16조	제 정
4.3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법	44조	同
	노동조합법	42조	
	부녀자권익보장법	54조	
8	가축가금방역시행규칙	49조	同
5.5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50조	同
11	국유자산재산권등기관리에관한임시명령	21조	同
12	집회행진시위법시행규칙	33조	同
13	식물검역에관한명령	24조	同
20	중앙국가기관,사업단위의출장비자금에 관한규정	17조	
6. 1	국제과학기술협력상수여에관한명령	6조	
6	중국지진구획도(1990)사용규정	10조	
9	해상국제컨테이너운송관리규정시행규칙	91조	
22	도시녹화에관한명령	34조	
24	외국인투자기업회계제도에관한규정	82조	
	외국인투자기업재무관리규정	48조	
28	도시미관및환경관리에관한명령	45조	
7.1	인민경찰직위에관한명령	26조	
22	전민소유제공업기업의경영기구전환에 관한명령	27조	
8.2	주식시험기업의국유자산관리에관한	54조	
	세관의해남성洋浦경제개발구수출입화물운송 도구,개인휴대품및우편물관리에관한명령	26조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2. 9.4	세수징수관리법	62조	
	특허법	69조	개정
	탈세, 납세거부죄처벌에관한보충규정		제정
10	세관의출입국여객수하물관리규정	10조	同
17	등록회계사의주식시범기업관련업무에 관한임시규정	17조	同
	주식시범기업의인사관리에관한명령	16조	同
10.12	고층주민주택방화관리규칙	15조	同
14	한약품중보호에관한명령	27조	同
23	수출입상품검사법시행령	61조	同
24	수의사위생행정처벌에관명령	21조	同
11.7	광산안전법	50조	同
	해상법	278조	同
11	저축관리에관한명령	48조	同
19	약품행정보호에관한명령	24조	同
20	출입국여객의세관물품신고에관한규정	10조	同
30	기업재무통칙	46조	同
	기업회계준칙	66조	同
12.11	저축관리에관한명령	40조	同
19	약품행정보호에관한명령	31조	同
26	농업화학물질행정보호에관한명령	23조	同
22	특허법시행규칙	96조	同
28	수색구조용민용항공기규정	31조	同
	측량법	34조	同
	항공기, 선박탈취범처벌에관한결정		同
1993.1.1	해상항행경고및항행통고관리규정	25조	同
	은행외환업무관리규정	78조	同
	비은행금융기관의외환업무관리규정	71조	同
12	중의합자합작경영기업감사에관한명령	11조	同
13	세관의수출입속달화물감독관리에관한명령	18조	同
20	국가화폐반출입관리에관한명령	8조	同
2.14	선박및해상시설검사에관한명령	34조	同

연월일	법률명	조문수	비고
1993.2.14	제품품질법	51조	同
2.22	국가안전법	34조	同
	상표법	43조	개정
	등록상표도용범죄처벌에관한보충규정		제정
	헌법	9조	개정
3.29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145조	제정
31	세관법행정처벌시행세칙	36조	개정
4. 1	선물증가회사등기에관한입시명령	17조	제정
8	국유기업직원실업보험규정	26조	同
12	주식의발행과거래에관한입시명령	18조	同
20	중국인민해방군현역사병복무에관한명령	84조	同
22	자연과학장려에관한명령시행세칙	54조	개정
27	세관의대의개방지구수출입화물관리규정	40조	제정
5. 8	중공공산당기율검시기관의고발,청원에	8조	同
21	관한명령	48조	同
	양안공증서사용사증협의에관한명령		同
28	전업법학단체심사허가에관한명령	19조	同
6.10	발명장려에관한명령	14조	개정
28	자연과학장려에명령	11조	同
	과학기술발전장려에관한명령	15조	同
	村庄및集鎮계획건설관리에관한명령	48조	제정
29	電網調度관리에관한명령	33조	同
	농업법	66조	同
7. 2	농업기술보급법	30조	同
	과학기술발전법	25조	同
	위조,불량상품생산,판매범죄처벌에관한결정		同
	기업노동쟁의처리에관한명령	43조	同
6	증권거래소관리에관한입시규정	59조	同
7	국유기업의임금총액과경제효익연계규정	27조	同
9	상표법시행규칙	50조	개정
15	상품거래시장등기관리에관한입시명령	21조	同
16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3.7.19	귀국교포권익보호법시행규칙	31조	개 정
	광산자원법규위반자에대한행정처벌명령	30조	제 정
8. 1	문맹퇴치에관한명령	17조	개 정
	녹음의법정허가보수금지급표준임시규정	6조	同
	연출의법정허가보수금지급표준임시규정	5조	同
	전재·편집의법정허가보수금지급표준 임시규정	5조	同
	취수허가제도시행에관한명령	38조	同
	수자원및토양보전법시행령	35조	同
2	기업채권관리에관한명령	39조	同
3	민용항공운송판매대리업관리규정	39조	同
4	핵발전소의핵사고응급처리에관한명령	42조	同
	세수징수관리법시행령	86조	同
14	국가공무원에관한입시명령	88조	同
15	증권사기행위금지에관한입시명령	29조	同
19	長江三峽공사건설이주민에관한명령	43조	同
9. 2	부정경쟁방지법	33조	同
	경제계약법	47조	同
4	접대부수용교육에관한명령	23조	同
	과학연구소에과학기술제품의수출입권한을 부여하는입시명령	13조	同
11	무선전파관리에관한명령	49조	同
15	民族鄉행정업무조례	24조	同
	도시민족업무조례	30조	同
29	國章도안의대외사용에관한명령	10조	同
10. 5	위성텔레비전방송수신시설관리규정	14조	同
	수생야생동물보호령	35조	同
	초원방화에관한명령	36조	同
7	기계설비·전자제품수입에관한입시규정	33조	同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3.10.7	육상석유자원의대외합작개발에관한명령	30조	同
	사회단체인장관리규정		同
18	도시민족사업에관한명령	30조	同
24	민족향행정업무에관한명령	24조	同
	소비자권익보호법	55조	同
30	개인소득세법	14조	개 정
	공인회계사법	46조	제 정
	교사법	43조	同
	적십자법	28조	同
	외국인의중국아동입양에관한명령	18조	同
11.10	국내항공운송여객의신체배상입시규정	11조	同
29	가옥철거증거보전공증세칙	16조	同
12.1	대외공무활동중의선물증정과접수에관한규정	15조	同
5	유가증권발행관리에관한명령	45조	同
12	소비세에관한입시명령	19조	同
13	영업세에관한입시명령	17조	同
	기업소득세에관한입시명령	20조	同
	토지부가가치세에관한입시명령	15조	同
	부가가치세에관한입시명령	29조	同
15	일반상품의수입할당액에관한입시명령	20조	同
22	영업세에관한입시명령시행세칙	36조	同
	부가가치세에관한입시명령시행세칙	39조	同
	자원세에관한입시명령	16조	同
	소비세에관한입시명령시행세칙	27조	同
	엽총탄약관리에관한명령	35조	同
	회사법	230조	同
29	회계법	30조	개 정
	지진감측시설및지진관측환경보호에관한명령	21조	제 정
1994.1.1	농촌생활보장에관한명령	25조	同
23	폐금속수매업의치안관리에관한명령	17조	同
25	개인소득세법시행령	47조	同
28	공사자문업관리에관한입시명령	23조	同
29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4.1.29	국무원의농업특산물수입에대한농업세징수에 관한규정	17조	同
31	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	13조	同
	종교활동장소관리에관한명령	20조	同
2.1	혼인등기관리관한명령	34조	同
3	국무원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	9조	同
	위성텔레비전방송지면접수시설관리규정	31조	同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34조	同
4	기업소득세입시명령시행세칙	60조	同
8	국무원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시행세칙	15조	同
15	외자금융기구관리에관한명령	51조	同
18	컴퓨터정보체계안전보호에관한명령	31조	同
26	의료기구관리에관한명령	55조	同
27	광산자원보상비징수관리규정	22조	同
28	상품및서비스의정찰제에관한규정	28조	同
3.5	대만동포투자보호법	15조	同
14	교학성과장려에관한명령	15조	同
22	예산법	79조	同
5.10	국가안전법시행령	28조	同
12	국가배상법	35조	同
	대외무역법	44조	同
	인민해방군의군관계급에관한명령	35조	同
	인민해방군의군관복역에관한명령	42조	同
	치안관리처벌령	45조	同
6. 2	선박등록에관한명령	59조	同
4	국가안전법시행세칙	28조	同
5	공탁공증규칙	31조	同
24	회사등기관리에관한명령	76조	同
7. 5	중외합작영화촬영에관한관리규정	27조	同
	노동법	107조	同
	도시부동산관리법	72조	同
13	외국인출입국관리법시행령	57조	개 정
	국민출입국관리법시행령	28조	同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4.7.19	도시홍수에관한명령	39조	제 정
30	국유기업재산감독관리령	50조	同
8. 4	국무원의주식회사의국외주식모집및상장에 관한특별규정	30조	同
18	기본농전보호령	40조	제 정
	기상령	40조	제 정
23	장애인교육령	51조	제 정
25	영상제품관리령	40조	제 정
31	중재법	80조	제 정
	회계검사법	51조	제 정
10.9	행정재의에관한명령	57조	개 정
	자연보호구에관한명령	44조	제 정
27	모자보건법	39조	제 정
	광고법	49조	제 정
	주식회사의토지사용권관리잠정규정	17조	제 정
10.20	도매시장관리규정	77조	제 정
	鄉鎮석탄광산관리령	32조	제 정
	석탄생산허가증관리에관한명령	21조	제 정
29	행형법	78조	제 정
	외국인투자기업문서관리규정	17조	제 정
31	건설항목의환경보호시설준공검사관리규정	17조	제 정
1995.1. 6	과학기술비밀보호규정	34조	제 정
11	공안기관의고발신고수리에관한임시규정	17조	同
25	국가배상비용관리에관한명령	16조	제 정
26	공공오락장소의소방안전관리규정	20조	제 정
27	토지부가세임시령시행세칙	24조	제 정
2. 6	환경공사시설계증서관리령	25조	제 정
9	당정지도급간부선발임용업무임시규칙	54조	제 정
11	파괴성지진응급조례	39조	제 정
15	행정사업단위의국유재산관리에관한명령	47조	제 정
	변호사업의부정경쟁행위반대에관한 약간의규정	15조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5.2.22	변호사사무소명칭관리에관한명령	25조	
24	국방교통령	55조	제 정
28	법관법	49조	제 정
	전국인민대표와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	53조	개 정
	세수징수관리법	62조	개 정
	인민경찰법	52조	제 정
3.18	교육법	84조	제 정
	인민은행법	51조	同
21	국제항행선박의항구출입국검사에관한명령	17조	제 정
22	약품광고심사령	23조	제 정
	부동산평가사의자격심사제도잠정규정	34조	同
26	노동부의'국무원의근로자근로시간에관한 규정'을관철하는시행세칙	12조	제 정
	인사부의'국무원의근로자근로시간에관한 규정'을관철하는시행세칙		同
4. 6	개인소득세의대리공제대리납부에관한 임시규정	25조	同
10	상업은행법	91조	제 정
	예비역군관법	56조	제 정
	어음법	111조	제 정
16	인민경찰의계급장및패대에관한명령	10조	개 정
6. 2	임시거주증신청에관한명령	19	제 정
3	민병의무기장장비관리령	46조	제 정
27	외국인의투자방향지도에관한임시규정	17조	同
30	담보법	96조	同
	보험법	152조	同
7. 5	지적소유권의세관보호령	36조	同
10	지도제작출판관리령	30조	同
19	중앙예산집행상황의회계검사감독에관한 임시명령	15조	同
20	출입국변방검사령	47조	同
	淮河유역수오염방지령	43조	同

연 월 일	법 률 명	조 문 수	비 고
1995.7 29	체육법	56조	제 정
	대기오염방지법	50조	개 정
9. 8	사법행정기관의행정배상,형사배상규정	34조	제 정
23	공인건축사령	37조	
10.30	민용항공법	214조	
	식품위생법	57조	
	고체폐기물의환경오염방지법	73조	

외국법제분석 95-3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와 최근의 法制發展

1995년 12월 25일 印刷

1995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3,000 원

